

자체평가 규정

제정 : 2009. 04. 30.
 개정 : 2015. 02. 06.
 개정 : 2016. 04. 08.
 개정 : 2018. 01. 12.
 개정 : 2019. 09. 06.
 개정 : 2022. 08. 05.
 개정 : 2022. 10. 07.

담당 : 평가감사실(02-950-5410)

----- 목 차 -----

제1조(목적)	제2조(평가원칙)	제3조(평가대상)	제4조(평가영역)
제5조(항목별 평가)	제6조(평가시기)	제7조(자체평가위원회)	제8조(회의록)
제9조(간사)	제10조(기획자문위원회)	제11조(평가계획 수립)	제12조(평가자료 제출)
제13조(평가실시)	제14조(실사)	제15조(평가결과 보고)	제16조(평가결과의 환류)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의 교육, 연구, 조직, 운영, 시설, 설비 등 대학 및 대학원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 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시하며 대학발전계획과 전략 수립 등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15.02.06)(개정18.01.12)

제2조(평가원칙) 평가는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.

제3조(평가대상) 평가대상은 본 대학 및 대학원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.(개정18.01.12)

제4조(평가영역) 평가영역은 대학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한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교육·연구 영역
- ② 조직·운영 영역
- ③ 시설·설비 영역
- ④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영역

제5조(항목별 평가) 자체평가의 평가영역,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은 자체평가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정한다.
(개정22.10.07)

제6조(평가시기) 평가는 매년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평가 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(개정16.04.08)

제2장 평가기구

제7조(자체평가위원회) ① 자체평가의 기획, 운영, 조정,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,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자체평가위원회(이하 “평가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(개정15.02.06)(개정16.04.08)

② 평가위원회는 연구위원 6인 이상, 실무위원 6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필요에 따라 평가영역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위원을 둘 수 있다.(개정 19. 09. 06)

③ 위원장은 평가감사실장이 당연직으로 한다.(개정16.04.08)

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(개정22.10.07)

1. 자체평가업무 총괄
2. 평가위원회 운영

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(개정22.10.07)

1. 자체평가 연구 및 집필을 위한 실무지원
2. 대학자체평가 보고서 작성
3. 대학자체평가 결과 보고
4. 기타 평가와 관련된 주요한 사항

⑥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 평가 연도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(개정22.10.07)

⑦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, 재적위원1/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회의록)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으며 총장에게 보고한다.(개정22.10.07)

제9조(간사)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10조(기획자문위원회) ① 자체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획/자문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함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 구성은 부총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전략기획실장, 평가감사실장, 학사부총장, 행정본부장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평가영역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위원을 둘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평가감사팀장으로 한다.

④ 자체평가기획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.(개정22.10.07)

1.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사항
2. 자체평가 예산 및 행·재정지원 사항
3.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
4. 개선 과제 및 개선 실적

제3장 평가방법 및 절차

제11조(평가계획 수립) 평가위원회는 매 학년도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평가계획을 공지한다.(개정18.01.12)

제12조(평가자료 제출) 평가관련 부서에서는 평가위원회에서 요청한 평가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18.01.12)

제13조(평가실시)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 기초 자료를 작성하고 평가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한다.

제14조(실사) 평가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평가관련부서에 실사를 할 수 있다.(개정18.01.12)

제15조(평가결과 보고) 자체평가위원장은 작성한 평가 자료와 평가관련 부서의 서류를 확인한 후 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는다.(개정18.01.12)

제16조(평가결과의 환류) ①대학자체평가결과는 대학 홈페이지 및 대학알리미에 공지한다
 ②평가결과를 반영한 개선계획 수립 및 환류를 위해 평가결과를 관련부서와 공유하고 관련부서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하여야 한다(개정19.09.06)
 ③평가결과를 반영한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차년도 자체평가 범위에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04월 0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0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09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0월 07일부터 시행한다.